

지 회 진 화 번 호
 서울 (02) 743-1937 부산 (051) 523-6023
 경기 (0333) 655-5233 강원 (0371) 44-1415
 충북 (0431) 223-7832 충남 (0417) 61-2215
 전북 (0652) 231-0824 전남 (062) 522-5768
 경북 (053) 422-7867 경남 (0551) 23-1741
 제주 (064) 22-6907 인천 (032) 762-7797
 대전 (042) 636-9896

양 봉 협 회 보

204호
 1997년 8월 25일
 월간 <비매품>

발행인: 정해운/편집인: 김충겸/인쇄인: 양광호/발행처: (사)한국양봉협회 110-126 서울특별시 중로구 종로6가173 삼보빌딩301호 전화(02)763-1372·5903·FAX:764-1297

9월부터 시행될 원산지표시 관계법

원산지 표시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는 물론 혼동표시나 방법 등도 엄격히 규제

정부는 지난 3월7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93년에 제정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공포하고 6개월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판매 농수산물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혼동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손상·변경 또는 위장·혼합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까지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 우리 양봉산업이 별 요 동없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고율의 관세장벽 외에 원산지표시 제도, 남북교역의 반입제한 등 세가지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관계법을 내용을 발췌 소개하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 규정 준수를 통하여 국산과 수입산의 차별화, 나아가서는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데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한다. <자료제공: 국립농산물검사소>

농산물 원산지표시 방법

1. 통관된 상태 그대로 유통되는 농산물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 관리세

칙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의해 표시하되 다음과 같다.

- (1)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 (2)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 (3)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 (4)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의도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배포·보관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최종 구매자에게 도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포장되어 유통되는 농산물(통관된 후 재포장하여 판매되는 농산물 포함)

가. 원산지 표시 활자크기

포장 전 면의 크기	활자 크기
30cm 이상 × 20cm 이상 또는 600cm ² 이상	38 Point 이상
15cm 이상 × 10cm 이상 또는 150cm ² 이상	20 Point 이상
10cm 이상 × 5cm 이상 또는 50cm ² 이상	12 Point 이상
10cm 이상 × 5cm 이상 또는 50cm ² 미만	8 Point 이상

가. 원산지 표시 활자크기
 나. 위치: 포장 전면에 표시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색깔: 포장지 바탕색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라. 표시방법
 (1) 포장지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랩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스티커 부착도 예외적으로 허용

(2) 그물망 재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부착 및 내찰 허용

3. 날개 또는 산물로 유통되는 농산물(통관된 후 재포장하지 않고 날개 또는 산물거래 농산물 포함)

다음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

구분	표시 방법	규격
날개판매	스티커 부착(현품)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용기판매	용기에 표시 푹말표시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가로 15cm × 세로 10cm, 높이 10cm 이상
산물거래	상품안내 표시판(판매장소)	가로 30cm × 세로 50cm 이상
진열판매	안내표시판(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다음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오렌지쥬스의 경우, 오렌지과즙 100%(국산 30%, 브라질산 70%)

다.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에서 1차가공하여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원료의 원산지는 그 원료의 생산국명을 표시하되,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그 원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바.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2. 표시위치
 가. 국산 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되,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생산자의 시·군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수입원료는 생산국명을 표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생

산국명의 표시가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수입산」이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전담기관의 장은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동일 원료로 국산원료와 수입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국산원료와 수입원료를 할당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라. 원료 농수산물을 2차이상 가공한 원료를 보관·저장 또는 숙성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할 때는 식품공전상 당해 제품의 기준당도, 성분배합 기준에 따라 원료의 배합비율을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중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또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활자의 크기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의 활자는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한다. 다만, 용기나 포장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인 식품의 경우에는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색깔

활자의 색깔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색도로 표시한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997. 3. 7. 법률제529호, 발췌문)

제17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산 또는 수입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품목을 지정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용기·포장 또는 판매장소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한 경우 그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6면에 계속>

새로운 규격꿀병 발매안내

그동안 저희 제품을 애용해주신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독창적이고 견고한 새로운 규격꿀병을 생산·공급하게 됨을 널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국 판매망을 통해 최고의 품질로서 고객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2의 창업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시중에는 본사제품과 유사한 사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므로 두산제품인지 꼭 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꿀병 생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품규격 / BOX당 수량

구분	3kg	2.4kg	1.8kg	1.2kg	0.6kg	0.3kg
수량	9	12	12	15	15	48
구분	신2.4kg	신1.2kg	신0.6kg	신신1.2kg	50g	
수량	9	16	32	16	100	

두산유리 규격꿀병 총판

(주)대한양봉산업

☎ 156-035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242-2
 ☎ 817-8127 FAX: 817-8128

